
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안 번호	21047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6. 9. 3.
제 출 자 : 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의 범위에서 「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미래대응기금으로의 전입금을 제외하고, 이에 따라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차액 정산 시 내국세 세입 추세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하는 한편, 국가는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지방교부세의 재원 외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여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참고사항

- 가. 이 법률안은 「국회법」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.
- 나.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「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105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

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“내국세(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,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”를 “내국세(「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내국세 세입에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국가는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부세의 재원 외에 「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여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.

제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내국세 세입의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. 이 경우 예산액 또는 결산액이 「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내국세 세입 추세치보다 큰 경

우에는 내국세 세입 추세치를 예산액 또는 결산액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교부세의 재원)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. 1. 해당 연도의 <u>내국세(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,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 총액의 1만분의 1,924에 해당하는 금액</u> 2. ~ 6. (생략) 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4조(교부세의 재원) ① ----- -----. 1. ----- <u>내국세(「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내국세 세입에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)</u> ----- ----- ----- 2. ~ 6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국가는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부세의 재원 외에 「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여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.</u>
제5조(예산 계상) ①·② (생략) ③ 다음 각 호의 교부세 차액	제5조(예산 계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

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
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
야 한다.

1.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
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
차액

2. 3. (생략)

-----.

1. 「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
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
호에 따른 내국세 세입의 예
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
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. 이
경우 예산액 또는 결산액이
「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
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
호에 따른 내국세 세입 추세
치보다 큰 경우에는 내국세
세입 추세치를 예산액 또는
결산액으로 한다.

2. 3. (현행과 같음)
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제4조제1항 (교부세의 재원)	내국세 세입 중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되는 추가세수 및 초과세수를 지방교부세(정률분)의 재원인 ‘내국세’의 범위에서 제외
2	제4조제3항 (신설) (교부세의 재원)	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의 일부를 교부세와 별도로 지방정부 지원을 위해 교부할 수 있는 근거 신설
3	제5조제3항 (예산 계상)	개정안은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 차액을 정산하되, 예산액 및 결산액의 상한을 국세 세입 추세치로 제한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제4조제1항 (교부세의 재원)	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제4조제3항 (신설) (교부세의 재원)	
3	제5조제3항 (예산 계상)	

2. 상세 사유

-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및 재정지원 체계를 개편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기반 강화 및 안정적 재정운용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교부세 산정방식 변경 등으로 지방정부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총액이 현행 제도 유지 시와 비교하여 변동될 수 있음
 - 특히, ‘27년 경우 개편안에 따른 지방교부세 규모가 현행 제도 유지 시의 규모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현행 대비 개정안에 따른 지방교부세 규모가 순감할 것이라

단정하기 어려움

- 현행 제도 유지에 따른 지방교부세 규모 추계는 ①패키지 법안으로 입법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법 제정 전 현행 제도, ②미래대응기금법 제정 시의 현행 제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
 - ①의 경우, 향후 '27~'30년 내국세 규모에 대한 공식 추계가 없어 현행 제도 유지 시의 지방교부세 규모 산정이 곤란함
 - ②의 경우,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으로 기존 지방교부세 모수인 내국세 중 추가세수 등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될 예정이나, 매년 미래대응기금 전출 규모(추가세수, 초과세수 등)를 현 시점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규모 산정이 곤란함
- 한편, 법 개정 시에도 지방교부세 총 규모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, 동 개정안의 시행이 지방정부 세입의 순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- 다만, 동 법률안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 및 재정지원 등을 향후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내국세 규모 및 지방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세부 변수 등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
 - 또한, 향후 세입 여건 및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지방교부세 규모가 변동될수 있어 법률안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재정소요액을 현 시점에서 산출하기 어려움
- 이에 법률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: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주무관	사무관	과장	국장
정양제	권순현	지용구	정종훈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권순현	044-205-3754	kirin161@korea.kr